

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

납부 의무자	상호(명칭)	
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
	사업장 주소	

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
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미납 여부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
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	미납 여부

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 취소 금액 내용
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(분할납부기한)	금액(분할납부금액)

취소 사유

귀하에게 제 호(20 . . .)로 승인한 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를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직인